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5. 26 선고 2016가합10013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1. A

2. B

可 고 C

변 론 종결 2017. 4. 7.

판결 선고 2017. 5. 26.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제1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창녕등기소 1994. 9. 23. 접수 제2630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별지 제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제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4. 5. 24. 접수 제1243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별지 제3 목록 기재 부동산 중 D 지분(이하 '제3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9. 12. 22. 접수 제2473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별지 제4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제4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9. 12. 29. 접수 제2521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별지 제5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제5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0. 3. 8. 접수 제374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D, E 부부의 4녀 1남 중 장녀와 차녀이고, 피고는 위 망인들의 아들이다.

나. 망 D는 1994. 5. 31., 망 E은 2014. 1. 19. 각 사망하였는데, 망 D 소유의 제1, 2, 3 부동산 및 망 E 소유의 제4, 5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목적물	등기원인	등기일
제1 부동산	1994. 5. 3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1994. 9. 23.
제2 부동산	1994. 4. 29. 증여	1994. 5. 24.
제3 부동산	1994. 5. 3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2009. 12. 22.
제4 부동산	2009. 12. 28. 증여	2009. 12. 29.
제5 부동산	2010. 3. 5. 증여	2010. 3. 8.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6, 8,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제1 내지 5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위 각 상속재산분할협의 및 증여계약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효이므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정당한 원인 없이 마쳐진 무효의

등기이다. 따라서 위 망인들의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은 보존행위로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1) 망 D가 사망한 후 제1, 3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약이 이루어진 적이 없음에도 위조된 분할협약서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고, '위 망인의 상속재산중 원고들의 상속지분을 피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원고들의 각 인증서는 2002. 4.경 '위 망인 소유 부동산에 관한 소송상 편의를 위해 필요하다'는 망 E의 말에 속아작성해 준 것이다.

2) 피고는 1977년경 정신분열증이 발병한 이래 증상이 점점 악화되어 위 각 상속재산분할협약의 및 증여계약을 체결할 당시 의사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

나. 판단

1)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므로(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등 참조), 그것이 위조된 서류에 의해 마쳐진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조된 분할협약서 또는 망 E의 기망행위에 의해 마쳐진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갑 1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또한, 갑 14, 17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카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위 각 상속재산분할협약의 또는 증여계약을 체결할 당시 조현병(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당시 피고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갑 12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송경근, 판사 김재은, 판사 이도경